

●고용노동부공고 제2024-156호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03월 29일

고용노동부장관

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

공표제목	사업장 명칭	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	중대산업재해 발생 장소	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	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	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
1. 제동건설 주식회사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	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	2022년 2월 23일 10시경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24(아라일동)	사망 1명	○ 내용: 굴착기를 이용하여 기존 생활관 해체작업 진행 중 굴착기 운전자가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체에 깔려 사망함 ○ 원인: 제동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(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), 제3호(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) 제5호(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·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) 제7호(종사자 의견청취), 제8호(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)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·감독이 이뤄지지 못했으며, 해체작업 전 건물의 구조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	2018년 11월 13일 ~ 2023년 11월 12일 까지 중대산업재해 1건 발생

공표제목	사업장 명칭	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	중대산업재해 발생 장소	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	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	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
2 한국제강 주식회사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	(주)한국제강	2022년 3월 16일 13시경	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	사망 1명	○ 내용: 1.2톤 상당의 방열판(철판)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방열판과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진 방열판에 깔림 ○ 원인: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(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·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), 제9호(도급·용역·위탁시 평가 기준 마련)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,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하였고,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	2018년 12월 28일 ~ 2023년 12월 27일 까지 중대산업재해 2건 발생